

## 제 18 장 협 력

### 제 18.1 조 분쟁해결조항의 비적용

제20장(분쟁해결)은 이 장 하에서 발생하는 사안이나 분쟁에 적용되지 아니한다.

### 제 18.2 조 정보통신기술

#### 정보통신기술분야 협력

1. 양 당사국은, 국내 및 국제적 맥락에서 정보통신기술과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사업관행이 민간부문의 주도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, 정보통신기술(ICT)의 이용을 통하여 양 당사국에 대한 최대한의 혜택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한다.

#### 협력의 형태 및 분야

2. 제1항에 따른 협력 형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.
  - 가. 정책문제에 관한 대화 증진
  - 나. 양 당사국의 민간부문 간 협력의 증진
  - 다. 정보통신기술 관련 국제포럼에서의 협력의 증진, 그리고
  - 라. 그 밖에 적합한 협력활동 수행
3. 제1항에 따른 협력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.
  - 가. 공개키기반구조의 상호 호환성
  - 나.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·처리·관리·배급 및 무역
  - 다. 제3시장에서의 사업 기회, 그리고
  - 라. 정보통신기술(ICT)전문가 자격증의 상호인정

### 제 18.3 조 전자상거래

1.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발전에 관한 선진기법을 공유하는 등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증진할 연구 및 교육훈련활동에서의 협력을 권장한다.
2.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허용하기 위하여 전자인증을 위한 국내법 규정을 유지한다.
  - 가. 기술 및 시행 모델에 대한 인정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전자 거래 당사자들이 그들의 전자 거래를 위한 적절한 인증기술과 시행모델을 결정하도록 한다. 그리고
  - 나. 전자거래 당사자들이 그들의 전자거래가 법률 요건을 준수함을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.
3. 양 당사국은 국제적으로 수용된 표준에 기반한 정부차원의 교차인정 체제를 통하여 전자 증명서를 상호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한다.
4. 양 당사국은 업계에서의 전자 증명서의 상호 호환성을 권장한다.

### 제 18.4 조 과학 기술

1. 양 당사국은, 각 당사국 경제에서의 과학 및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,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을 개발하고 증진한다.
2. 양 당사국은, 적절한 경우에,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 양 당사국의 민간 부문 간 협력활동을 또한 권장한다.
3. 이 조에 따른 협력은 다음의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.
  - 가. 과학자·연구원·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
  - 나. 과학 및 기술적 성격의 문서 및 정보의 교환
  - 다. 세미나·심포지움·회의 및 그 밖의 과학기술회의의 공동개최
  - 라. 상호 관심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 활동의 시행과 그러한 연구개발 활동 결과의 교환
  - 마. 과학기술활동 결과의 상업화에 있어서의 협력. 그리고

바.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형태의 과학기술협력

4. 이 조에 따른 협력은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.
  - 가. 생명공학
  - 나. 나노기술
  - 다. 전자공학
  - 라. 미소 전자공학
  - 마. 신소재
  - 바. 정보통신기술
  - 사. 제조기술
  - 아. 환경기술. 그리고
  - 자. 과학기술 정책 및 연구개발 시스템

## 제 18.5 조 금융서비스

### 규제 협력

1. 양 당사국은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다음을 위하여 규제 협력을 증진한다.

- 가. 건전한 건전성 정책의 시행과 타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운영하는 일방 당사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의 증진
  - 나.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를 포함하여 금융 서비스의 세계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
  - 다. 적법한 금융시장 혁신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환경의 유지. 그리고
  - 라. 위기가 발생한 경우, 체계적 위기를 최소화하고 파급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의 실시

2. 제1항에 명시된 규제 협력의 일환으로, 양 당사국은 각국의 증권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각 당사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의 증권시장 및 증권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협력한다. 이와 관련하여, 각 당사국의 규제기관은 양해각서를 통하여 증권시장 및 증권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정보공유 협정을 공식화하도록 권장된다.

3. 제12.5조, 제12.8조, 제12.12조, 제12.13조는 이 조 제2항에 명시된 양 당

사국 간 협력에 적용되지 아니한다.

### 자본시장의 발전

4. 양 당사국은, 자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급속히 진화하고 있는 전 세계 금융거래에서 자국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인식하여, 전전하고 진화하는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자본시장의 심도와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의 자본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협력한다.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거래소를 연계하는 것이 양 당사국에 상업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,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그러한 연계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한다.

### 제 18.6 조 무역 및 투자의 진흥

1. 양 당사국은, 양 당사국의 민간 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양 당사국의 노력이 양 당사국 간, 나아가 아시아에서의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임을 인식하여, 양 당사국의 민간 기업 간 무역 및 투자 활동을 진흥하는데 협력한다.

2. 양 당사국은, 일방 또는 쌍방이 양 당사국 정부 외의 일방 또는 쌍방이 각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기관인 경우, 그 당사자 간의 특정 협력이 양 당사국 간의 무역 및 투자 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. 그러한 협력은 부속서 18A의 제1절에 명기되어 있다.

3. 양 당사국은 제1항에 규정된 협력을 검토하고, 적절한 경우 그러한 협력 당사자 간 협력제고를 위한 방법 및 분야를 권고한다.

### 제 18.7 조 서류 없는 전자무역

1. 서류 없는 전자 무역이 양 당사국 간 무역 증진에 지대한 기여를 한

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,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서류 없는 전자무역을 실현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협력한다.

2.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의 국경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국내의 전자적 환경을 위하여 서류 없는 전자무역 발전에 관한 연구를 위한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한다.

3. 양 당사국은 관련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서류 없는 전자 무역 관련활동에 대하여 협력하도록 권장한다. 그러한 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.

가. 양 당사국의 정부 및 기업 간 서류 없는 무역을 제공하는 시설의 설립 및 운영

나. 전자 무역관련 정보 및 전자문서의 이용 및 교류 방법과 법률기반의 표준화 및 구축을 위한 가능한 조치에 관한 공동연구, 그리고

다. 송장·포장명세서 및 원산지증명서와 같은 무역관련 문서의 전자적 전송을 포함하는 실현가능한 시험사업의 시행

### 제 18.8 조 방 송

1. 양 당사국은, 양 당사국 간 문화교류 및 이해의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방송의 중요성과 방송기술 및 혁신적인 방송서비스의 급속한 발전을 인식하여, 방송 분야에서의 당사국 간 협력을 권장한다.

2. 방송 분야의 협력에 관한 범위·형태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부속서 18A의 제2절에 명기되어 있다.

### 제 18 .9 조 환 경

압축천연가스(CNG) 기술 및 환경 보호에 대한 응용 분야에서 양 당사국의 관련단체 및 산업 간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를 희망하여, 양 당사국은 당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.

## 제 18.10 조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

양 당사국은,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번영이 인적자원의 지식과 기술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인식하여,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 분야에 있어서 양 당사국 간 협력을 개발하고, 일방 또는 쌍방이 각각의 영토 내에 있는 기관인 경우, 당사자 간의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권장한다. 그러한 협력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.

### 가. 정부공무원의 교류

양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 정부 정책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부공무원의 교류를 증진한다. 그러한 정부 공무원의 교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속서 18A의 제3절에 명기된다.

### 나. 교육기관 간 협력

양 당사국은 디지털 미디어공학 분야와 같은 양 당사국의 고등 교육 기관 간 복수학위 프로그램의 출범을 촉진한다.

### 다. 제3국 연수 프로그램

양 당사국은 의미있고 생산적인 기술 원조를 제3국에 공동으로 제공함에 있어, 특히 제3국의 사회 및 경제 자원을 개발하는데 제3국 공동 훈련 연수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, 양 당사국 간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데 있어서의 제3국 훈련 연수프로그램의 중요성과 역할을 인식하여, 양 당사국은 제3국 훈련프로그램의 협력 수준을 현재보다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다.

### 라. 인구 노령화

양 당사국은 인구 노령화에 관한 정책문제에 대하여 의견 및 경험을 교환한다.

### 마. 인적자원개발 인증제

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인적자원개발 인증제(PD)에 관한 의견 및 경험의 교환을 촉진한다.

## 제 18.11 조 해상 운송

1. 양 당사국은, 각 당사국의 경제에서의 해상운송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, 해상운송 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을 개발하고 증진한다. 그러한 협력활동

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.

- 가. 각 당사국이 자국의 해기사자격훈련 및 그 밖의 해상응용을 위한 모의훈련기(simulator) 사용방법 습득을 목적으로 연구방문을 통한 해상모의 훈련교관(maritime simulation instructor)/평가자와 해기사자격증("CoC") 시험관의 교류
- 나. Non-SOLAS 선박의 수송관리, 항해보조장치의 모니터링과 해상 투기활동의 감시와 같은 해상 응용을 위한 저가의 자동식별시스템의 개발

2. 양 당사국은 양국이 1981년 5월 26일에 서명한 「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 간의 해운협정」에 의하여 추가적인 해상협력을 구체화하는데 대하여 협의하기로 한다.

### 제 18.12 조

#### 에너지

- 1. 양 당사국은, 각 당사국의 경제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,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활동을 개발하고 증진한다.
- 2. 그러한 협력은 다음의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.
  - 가. 석유/가스 탐사의 목적으로 양 당사국의 민간 부문 간 협력의 촉진
  - 나. 공동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양 당사국의 연구기관 및 대학 간 협력의 촉진, 그리고
  - 다. 연구 방문 또는 시행당국이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활동을 통하여 전기 및 가스 구조조정 노력 분야에서의 정보 교환 및 경험 공유

### 제 18.13 조

#### 영화제작

- 1. 양 당사국은, 당사국의 영화 산업의 발전과 확대에 있어서의 영화 공동제작의 중요성과 그러한 공동제작이 양 당사국 간 이해 및 문화교류를 증진 할 잠재력을 인식하여, 영화제작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.
- 2. 영화 제작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범위·형태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

부속서 18A의 제4절에 명기되어 있다.

### **제 18.14 조 게임 및 애니메이션**

양 당사국은, 양국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게임 및 애니메이션 산업의 잠재력과 혁신적인 미디어 서비스의 급속한 발전을 인식하여, 양국 간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.